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6-2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03(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공고사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불능(수취인부재 · 주소불명 등)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이름	생년월	주소	납입기한
1	문*환	'80.11	경기도 오산시 거주	2026.12.1.
2	이*라	'88.05	경기도 안산시 거주	2026.12.1.
3	S***** D***** GABRIELE	'01.02.	인천광역시 중구 거주	2026.12.1.

※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548)로 문의 바랍니다.

4. 근거법령 및 처분원인

가.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 처분원인: ^{1.2)}2026. 5. 2.(토) 14:20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진입,
³⁾2026. 5. 4.(월) 22:03경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진입
다. 부과내용: 과태료 200,000원

라. 납부방법: 은행 · 우체국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5.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

가. 제출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6. 12. 1.까지)

나. 제 출 처: 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안전관리계)

(연락처: 041-950-2548 / 팩스: 041-950-2948)

다. 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조서식(의견제출서)

6. 안내사항

가.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6.12.1.까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

나.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라. 위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5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